

경운대학교 편제및정원조정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운대학교 「편제 및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편제 및 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편제 및 정원조정”이란 대학 발전계획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조직을 조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원조정, 신설, 통합, 변경, 모집중지, 폐지 등과 같은 조치를 말한다.
2. “계열”이란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의학으로 교육부 5대 대계열 분류를 말한다.
3. “학부(과)”란 대학내 학부 및 학과, 단일 학부 대학에서는 전공을 말한다.
4. “정원”이란 제3호에서 정한 학부(과)의 입학정원을 말한다.
5. “정원조정”이란 학부(과)의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6. “학부(과)신설”이란 새로운 학부(과)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7. “학부(과)통합”이란 기존 2개 이상의 학부(과)를 1개 학부(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8. “학부(과)변경”이란 명칭 및 소속단과대학의 변경을 말한다.
9. “모집중지 학부(과)”란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모집단위(학부(과))를 말하며, “폐과” 전 단계로서 모집중지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해당 학부(과)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전공교육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전공단위를 말한다.
10. “폐과”란 적법한 개정 절차를 통해 모집중지 후 편제정원이 완전히 소멸되는 모집단위(학부(과))를 말한다.

제2장 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조정 발의자가 참석하여 발의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01.>

제5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편제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연구
2.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의 신설, 통합, 변경, 모집중지, 폐지 등 편제 조정에 관한 사항
3. 학부(과) 입학정원의 증원 또는 감축 등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학부(과) 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편제 및 정원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교원의 소속 전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에서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조정업무) 교육편제 및 정원의 조정에 관한 업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0.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